

신뢰 기반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
『**개인정보 보호법**』 개정안

2021.2.



Contents

I 추진 배경

II 추진 경과

II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1.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
2.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3.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

IV 향후 계획



I ▶ 추진 배경

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 추진 배경

- ✓ 데이터 3법(개인정보 보호법, 정보통신망법, 신용정보법) 개정('20.8.5. 시행)으로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 타워 구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석 마련
 - 행안부·방통위·금융위(일부)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위로 통합,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의 이관,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안전한 결합·활용 등
- ✓ 그러나, 데이터 3법 개정 국회 논의 시,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서 약화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는 차기 입법과제로 유보한 바 있고,
 -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현실과 괴리된 불합리한 규제*가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 우려
 - * 필수적 사전 동의 제도, 경직된 국외 이전 요건, 온-오프 라인 규제 이원화 등

» 정보주체 권리 강화, 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보호와 활용의 균형있는 규율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필요

II 추진 경과

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 추진 경과

- ✓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 수요 발굴 및 내부 T/F 구성·운영 ('20.8.~)
※ 특례 규정 정비, 정보주체 권리 강화, 제재 규정 정비 등 제도 담당자
- ✓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('20.9.~)
※ ① 정보통신서비스 특례(9.24.) ② 정보주체 권리(10.6.) ③ 동의제도(10.15.) ④ 국외이전(10.21.) ⑤ 제재규정(10.23.)
- ✓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연구 위원회(학계·법조계) 출범 ('20.11.16.)
- ✓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 보고 ('20.12.9.)
- ✓ 관계부처 협의 ('20.12.31.~'21.1.18) 및 입법예고 ('21.1.6.~'21.2.16.)
- ✓ 산업계 의견 청취 ('21.1.15.) 및 시민단체 의견 청취 ('21.1.25.)



III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1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2.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3.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

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1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①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

☑ (필요성) 데이터 경제 활성화로 개인정보가 대량 수집·유통되고 있으나, 정보주체는 본인정보를 자기주도적으로 유통·활용하는데 한계

- 금융·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근거*를 마련하여 마이 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분야별 추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

* (신용정보법)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/ (전자정부법 개정 중) 공공 분야 데이터 이동권

사례

- ▣ (현행) A는 즐겨 찾던 B사의 SNS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, 해당 서비스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기사를 접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낌
→ (개정 후) A는 B사에 비해 보안성이 우수한 C사의 SNS 서비스로 개인정보 이동 가능

☑ (개정안)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이동권 신설

-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, 제공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
→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와 함께 분야별 이동권을 전 분야로 확산

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1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①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

☑ 국내외 입법례

구분	GDPR(제20조)	신용정보법(제33조의2)	보호법 개정안
주 체	· 개인 정보주체	· 개인 신용정보주체	· 정보주체
상대방	· 컨트롤러	·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	· 개인정보처리자
주요내용	· 자신의 개인정보를 체계적 형식으로 제공받거나, 다른 처리자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	·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 또는 신용정보 관리 회사 등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	·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(다른 개인정보처리자,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)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정보범위	· 정보주체가 동의하였거나, 계약의 이행을 위한 경우 · 자동화된 수단에 의한 경우 ※ 처리자가 생성·파생한 정보 제외	·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· 신용정보주체가 제공한 정보 · 권리·의무 관계에서 생성한 정보 ※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이 별도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제외	· 동의 또는 계약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·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고 자동화된 방법으로 처리
권리제한	· 타인의 권리와 자유 침해 불가	·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배제	· 타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 침해 불가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1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② 자동화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도입

☑ (필요성) 인공지능의 발전 등에 따라 자동화된 의사 결정(신용평가, 인사채용 등)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특정인에 대한 감시·편견 등 신규 프라이버시 이슈 제기

- 개인 의사에 반한 자동화된 결정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주체의 대응권 보장 필요

※ (한국) 신용정보법, 금융 분야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이의 제기권 규정
(EU) GDPR, 자동화 의사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의견 표현, 이의 제기권 및 거부권 규정

☑ (개정안) 산업적 효용과 정보주체 권리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자동화 의사 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도입하되, 적용 범위를 명확화

-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정보주체에게 법적 효력 또는 생명·신체·정신·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, 해당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, 이의 제기 및 설명요구권 등 신설

※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,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,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 배제

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1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② 자동화 의사결정에의 대응권 도입

☑ 국내외 입법례

구분	GDPR(제22조)	신용정보법(제36조의2)	보호법 개정안
주 체	· 개인 정보주체	· 개인 신용정보주체	· 정보주체
상대방	· 컨트롤러	·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 등	· 개인정보처리자
주요내용	· 프로파일링 등 본인에 관한 법적효력을 초래하는 자동화된 처리에만 의존하는 결정의 적용 금지	· 자동화 평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 제기 권리 보장	·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만 의존하여 정보주체에 법적 효력 등을 미치는 경우 대응권 보장
정보범위	① 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필요한 경우 ② EU 또는 회원국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에 근거하는 경우 적용 배제	·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, 신용정보주체 요구에 따라 시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 적용 배제	· 동의 또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권 불인정
주요권리	· 컨트롤러의 인적 개입 확보, 본인의 관점 피력, 이의 제기 권리	· 기초 정보 정정·삭제 요구, 자동화 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	·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배제, 재처리, 설명 등 요구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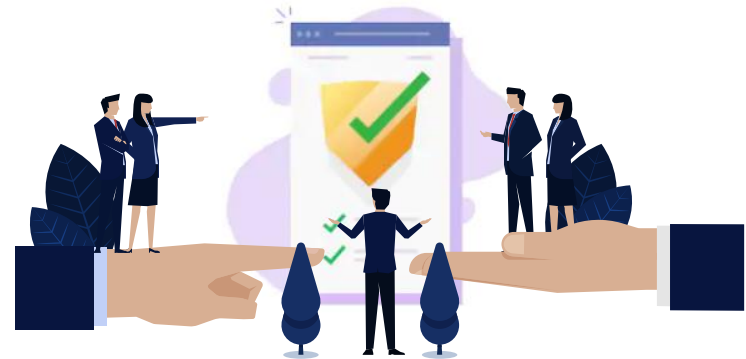
1.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강화

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

③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실질화

- ☑ (필요성) 개인정보 권리 침해 시, 소송에 앞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(침해중지, 손해배상 등) 하는 **분쟁조정제도 운영 중**
 - 조정신청 시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에 한하며,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권이 없어 적극적 조정에는 한계
- ☑ (개정안) 분쟁조정 요청 시, **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**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, **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 부여**

※ (유사 입법례) 건설분쟁조정위원회(「건설산업기본법」),
환경분쟁조정위원회(「환경분쟁조정법」) 등

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2.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④ 동의제도 개선

☑ (필요성) 사전동의 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형식적 동의 및 '동의 만능주의' 관행 지속

- 정보통신서비스 특례(제39조의3)는 사실상 동의만을 적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, 국민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서비스 이용 가능('동의 강제' 관행)
-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정 고지사항 등을 담은 '개인정보 처리방침'에 대한 실체적 통제 미흡

☑ (개정안)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고, 기업 등의 합리적인 개인정보 수집·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동의제도 개선

- 정보통신서비스 특례의 '필수동의' 규정을 정비하여 '동의 만능주의' 현상을 개선하고, 동의 이외의 개인정보 적법 처리요건 활성화
-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보호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심사제도 도입

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2.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⑤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(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)

☑ (필요성) 데이터 3법 개정 시, 정보통신망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특례 규정(제6장)으로 단순 이전·병합

- 온·오프라인 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, 오프라인 규제(일반 규정)와 온라인 규제(특례 규정)의 이원화로 기업의 법 적용 혼선 및 이중 부담이 발생

사례

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, 오프라인 기업(일반 규정)은 과태료 5천만원 이하인데 반하여, 온라인 기업(특례 규정)은 관련 매출액의 3% 이하 과징금을 부과

☑ (개정안)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을 폐지하고, 일반 규정으로 일원화하여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'동일행위 - 동일규제' 원칙 적용

- **규정 통합** 일반 규정과 유사·중복되는 특례 규정*은 일반 규정으로 통합·정비하여 온-오프라인 사업자 간 상이한 규정 내용 또는 벌칙을 단일화
*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,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,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·신고, 보호조치 특례 등
- **적용 확대** 특례 규정에만 있는 손해배상 보장 제도,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,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등은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분야로 확대 적용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2.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⑤ 이원화된 규제의 일원화(정보통신서비스 특례 규정 정비)

☑ 개정 방향 : “모든 수범자 동일 규제” 원칙 적용

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

특례 규정
·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(제39조의3 ①②)
·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개인정보 수집(제39조의3 ③~⑥)
· 유출 통지·신고제도(제39조의4)
·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(제39조의5)
· 유효기간제(제39조의6)
· 동의철회권 규정(제39조의7)
· 이용내역 통지제(제39조의8)
· 손해배상책임의 보장(제39조의9)
· 노출된 개인정보 삭제(제39조의10)
· 국내대리인 지정(제39조의11)
· 개인정보 국외이전(제39조의12)
· 상호주의(제39조의13)
· 방송사업자등 특례(제39조의14)
· 과징금 특례(제39조의15)

② 사업자에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

개정 방향
· 제15조에 통합
· 제22조의2로 신설
· 제34조에 통합
· 제28조에 통합
· 삭제
· 제37조에 통합
· 제20조의2 신설
· 제39조의16 신설
· 제34조의3 신설
· 제31조의2 신설
· 제28조의8 내지 제28조의10 신설
· 제28조의11 신설
· 삭제 ※ 방송사업자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포섭
· 제64조의2 신설

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2.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⑥ 형벌 중심을 경제제재 중심으로 전환

- ☑ (필요성)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한 경제제재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,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지 못하는 한계

- 경제적 제재 수단인 과징금은 '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'의 3% 이하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

※ (EU) GDPR, 2천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총 매출액의 4%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

→ 브리티시 항공 50만명 유출(2,700억원 과징금, 영국), 구글 동의 방식 미 준수(650억원 과징금, 프랑스)

- ☑ (개정안) 형벌 중심을 경제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효성 제고

- **형벌 제한** 형사 처벌 대상을 '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'의 위반행위로 제한하고, 정보통신서비스 특례 정비에 따라 과도한 형벌 규정*은 과징금으로 전환
- **과징금 확대**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적용되는 과징금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,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전체 매출액의 3% 이하로 상향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2.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⑦ 개인정보 침해 조사 및 제재 기능 강화

- ☑ (필요성) 현행법은 시정명령 부과 요건*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, 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수준이 미흡

-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사적이용 및 수탁자에 대한 제재근거 또한 부재

*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 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,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 명령 가능(법 제64조)

- ☑ (개정안) 시정명령 부과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

- 개인정보취급자가 '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 시' 처벌 근거 마련,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도 과태료·과징금·형벌 등 제재 대상에 포함*

* 현행법은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, 제재 대상에는 누락

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2. 개인정보 규제 및 제재 합리화

⑧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

☑ (필요성)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 상거래 확대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, 국외 이전 시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요구로 인한 기업 부담 유발

- 반면,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만 있으면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지역으로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가 오히려 취약해 질 가능성

사례

▣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 상품 구매 시, 국내 쇼핑몰이 해외 판매자에게 배송 및 주문 정보 등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, 그 때 마다 동의를 요하는 불편이 있음

▣ EU 국민은 해외 상품 구매 과정에서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정성 결정, 표준 계약 조항 등에 기하여 동의 없이 이전 가능 (통상 협상 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한 개선 요청 지속)

☑ (개정안) 개인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한 동의 이외의 적법 요건을 다양화

- **요건 다양화**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동의 없이 국외 이전 허용 ((EU) GDPR, 국외 이전 제도 참조)
※ (기타) ① 타 법률 또는 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계약 체결 및 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·보관을 위하여 법정고지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경우 등
- **보호조치 강화** 법을 위반하여 국외이전하거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시 중지명령권 신설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3.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

⑨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성화

- ✓ (필요성) 개인정보 축적·활용이 급증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정부 주도 규제만으로는 한계
→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·기관의 자율 보호 활성화 필요
- ✓ (개정안)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·기술적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
 - 민간 자율규제단체의 자율보호 활동을 총괄·지원하고 정부와의 소통창구 기능을 수행하는 '자율규제단체 연합회' 설립근거 마련

⑩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

- ✓ (필요성)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기기(CCTV)만을 규율하고 있어,
드론,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에 맞는 기준제시에 한계
 - 현재 이동형 영상기기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시 일반 규정이 적용되어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에 한계
- ✓ (개정안) 공개된 장소 등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,
 -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, 촬영사실을 표시하였음에도 거부의를 밝히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 허용

Ⅲ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

3.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

⑪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환경 마련

- ☑ (필요성) 가명정보 '파기 의무' 및 반출 심사 위원 등의 '비밀유지 의무' 누락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비점 보완 필요
- ☑ (개정안) 가명정보 처리 특례 규정의 일부내용* 개정, 가명정보 결합에 관한 업무 수행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

* 법 제28조의 2 제1항이 가명정보의 처리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를 포함한다는 사실 규정, 법 제28조의 7의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21조(개인정보의 파기) 삭제

⑫ 적용의 일부 제외 규정 정비

- ☑ (필요성) 현행법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적용 예외 규정을 환경변화에 따라 정비할 필요
 - 「통계법」, 「감염병예방법」 등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어, 보호법의 적용 예외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
- ☑ (개정안) 통계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를 일부 제외대상에서 삭제, 공중위생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항목을 수집·이용 근거(제15조)로 이관

IV ▶ 향후 계획



IV 향후 계획

향후 계획

-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-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
- 국회 제출

감사합니다.

